

#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6. 3. .
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년 11월 22일, 안호영의원 등 10인

나. 회부일자: 2024년 11월 2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22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2025. 2. 18.) 상정, 제안설명,

검토보고, 대체토론, 소위원회부

제431회 국회(임시회)

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 1. 27.) 상정, 축조심사,

의결(수정가결)

제433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2026. 3. 11.) 상정, 소위심사보고,

찬반토론, 의결(수정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안호영의원)

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의 연구·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·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·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, 산림기술의 연구·개발과 관련된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4항 신설)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임재금)

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자, 산림기술의 연구·개발과 관련된 기관·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4항 신설).

현행법령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기술의 연구·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산림청은 2024년 3월, “산림기술 진흥을 통해 새로운 산림가치 창출”을 비전으로 하는 「제1차 산림기술진흥계획(2024년~2028년)」을 수립하였음.

그런데 현행법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하여,

산림청은 제1차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현행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외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실시하지 않았음.

즉, 산림기술진흥계획에 산림기술자, 관련 기관·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체계 하에서는 산림청의 재량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절차가 누락될 수 있으며,

이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이해관계자 등에게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함에 있어 사회적 여건 및 현장 적합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.

참고로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 유사입법례가 있음.

다만, 안 제3조제4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안 제3조제5항(현행법 제3조제4항)에서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안 제3조제5항에 통합

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.

산림청은 개정안에 대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, 의견수렴 절차는 통상적 수준에서 이행할 수 있으므로 절차의 방법 등 세부적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.

#### 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음

#### 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윤준병)

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함.

#### 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음

#### 7. 심사결과

수정가결

#### 8.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심사 내용

체계·자구심사를 거쳤음.

## 9. 심사보고서 붙임서류

가.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나.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##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6. 3.

제 안 자 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###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개정안은 산림기술자, 산림기술의 연구·개발과 관련된 기관·단체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동 내용을 기존의 위임 조항에서 함께 규정할 수 있도록 체계와 자구를 수정함(안 제3조제4항·제5항 수정).

##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###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4항 중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자”를 “산림기술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1항 및 제3항”을 “제1항, 제3항 및 제4항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(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) ①<br>~ ③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조(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) ①<br>~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3조(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) ①<br>~ ③ (개정안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<u>산림청장이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자, 산림기술의 연구·개발과 관련된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u> | ④ -----<br>-----<br>----- <u>산림기술자</u>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|
| ④ <u>제1항 및 제3항</u> 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| 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 <u>제1항, 제3항 및 제4항</u>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1항 및 제3항”을 “제1항, 제3항 및 제4항”으로 한다.

- ④ 산림청장이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, 산림기술의 연구·개발과 관련된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     정     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(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③ (생 략)<br>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  | 제3조(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br><u>④ 산림청장이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, 산림기술의 연구·개발과 관련된 기관·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u> |
| <u>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</u> | <u>⑤ 제1항, 제3항 및 제4항-----</u>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